

와글와글

청소년인권활동 안내서

Ver. I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차 례

■ 잠깐만!	3쪽
■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인권을 짓다	4쪽
■ 요이 땅~ 학교 안에서 활동하기	7쪽
■ 교문을 넘어, 학교 밖에서 활동하기	18쪽
■ 왔어요 왔어~ 징계퇴치용 징계킬라	24쪽
■ 아하~ 요렇게 하는 거였군 - 기본 문서 맛보기.....	28쪽
■ 오훗~ 요런 게 있었네! - 청소년인권 관련 주요 기준들	35쪽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요...	51쪽

잠깐만!



바로 지금, 청소년에게 인간의 모든 권리를!

청소년인권, 청소년의 힘으로!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입니다.

강제이발과 두발단속, 차별, 언어폭력, 각종 복장규제, 휴대폰 소지 금지와 압수, 소지품 검사, 교문지도와 선도부에 의한 통제, 있으나마나 학생회, 동아리활동 탄압, 학교 맘대로 징계, 각종 차별 등등... 아직도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존엄성을 모욕하는 일들이 매일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인권을 내려놓고 학교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말이 넘쳐나는 지금에도, 이 땅 청소년들의 인권은 시궁창에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법률 어디에도 청소년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구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권의 역사가 말해주듯, 인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권의 주인인 우리가 우리 힘으로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청소년인권활동이 와글와글 꽃피지 않는다면, 청소년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이 모든 걸 말해줄 순 없어도, 활동을 고민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작은 등불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인권찾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인권을 짓다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이다.”

“인권을 알고 행사할 때 인권은 비로소 권리일 수 있다.”

청소년인권활동의 기본은 바로 인권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겠죠?

인권은 인간의 권리, 곧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자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코 빼앗길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권리인 것이지요.



청소년도 예외없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나이가 몇이고 신분이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예외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인권입니다. 그 사람의 성, 장애여부, 나이, 출신 등은 인권을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인권을 제한하기 위해 고려되어서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청소년도, 학생도 인권의 주인입니다.



청소년인권은 옵션이 아닌 기본!

인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필수적이지 않

은 권리보다 인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학교의 재량권이나 학교의 명예, 질서유지, 부모의 친권과 같은 것보다는 청소년의 인권, 청소년의 존엄, 청소년의 의견과 선택이 우선되어야 하겠지요?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유 없는 평등은 노예의 평등이고, 평등 없는 자유는 야수의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공포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삶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꾸려나갈 자유도 필요하고, 사회적 불평등이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사람답게 살아가고 성숙할 수 있는 평등도 필요합니다. 인권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인 셈이지요. 청소년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도 자유와 보살핌을 모두 누릴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흔히 불건전한 환경, 안전하지 못한 식탁, 부족한 교육환경, 폭력이나 착취와 같은 문제는 쉽게 공감대를 얻는 반면, 청소년들의 자율성, 선택, 자유, 자기결정과 같은 문제는 미성숙을 이유로 쉽게 부정됩니다. ‘다 너희를 위한 거야’라는 말로 청소년의 자유는 쉽게 무시되곤 하지요. 청소년도 사람인 만큼, 보살핌과 지원뿐 아니라 청소년 자신의 의사와 자기결정권도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야, 뭐하니?

국가에게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는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되고, 강자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찾아보고 집행해야 할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나 국회 등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만들거나 학교가 지켜야 할 학생인권지침을 만들거나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청소년인권은 늘 뒷전으

로 미뤄놓는 국가를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려면 청소년의 힘을 보여주어야 하겠지요?

법, 교칙보다 인권이 먼저!

사람들이 두려워 할 인권을 힘있는 강제규정으로 바꾼 것이 바로 법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최고 높은 법이라고 얘기하는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두려워 할 기본적 인권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함께 인권기준을 만든 '국제인권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인권을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현재의 법이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지요. 이럴 때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인권은 법보다 높다'는 말입니다. 인권은 법이 보장하는 수준에만 만족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인권을 주장하고, 현실의 법이 인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가장 가까운 '법'은 어쩌면 교칙이겠지요. 교칙을 가만히 살펴보면,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무시한 어이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인권을 제한하는 교칙은 인권의 이름으로 개정되어야 하겠지요.

나랑은 상관없다고?

우리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인권은 다른 사람의 인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침해는 다른 이들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다른 이들의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피고 힘을 보태야 합니다.

학교에서 나의 인권이 함부로 무시될 때, 친구의 인권이 침해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졸업할 때까지만 참자'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학교의 억압을 유지해온 것은 아닐까요?



요이 땅~ 학교 안에서 활동하기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모임 만들기

“이대로 가만있을 순 없어!” 학교의 인권 억압에 맞서 뭔가 행동하기로 결심했다면, 함께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친구들을 찾는 건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동시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그치만, 모임 만드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구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찾아내는 일은 아주 아주 신나는 일 아니까요!



[1] 두리번두리번, 지지자 찾기

지지자를 찾기 전에 우선, 자신의 여건에 맞는 방식이 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호흡다듬기> 주변 친구들에서부터 시작해 학교 안을 수소문해봅니다. 누가 선생님한테 개겼다더라, 누가 관심이 많다더라, 학생회 하는 친구 중

에 누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도는 친구들의 정보를 물색해봅니다. 정보를 얻으려면 체벌, 두발단속 등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사건 등 각종 소식이 귀에 들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좀더 짝세계~> 내가 직접 인권활동을 하면서 지지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발자유 서명을 받으려 했더니 도와준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함께 서명을 받게 됐다거나 △인권 버튼을 나눠주다 보니 특별한 관심을 가진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게 됐다거나 △인권동아리를 만든다는 소문이 돌자 같이 하자고 찾아온 친구가 있었다 등등. 이 경우는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면서 친구들을 모은 경우라고 봐야겠지요.

[2] 생각 모으기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라도 모였다면, 계속해서 친구들과 생각을 모어나가고 고민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친구들이 가진 관심과 고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 생각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 새 주위에는 같이할 친구들이 사라지게 돼요. 서로의 고민을 발전시키고 열정을 키워나가려면 지속적인 관계가 필수적이지요.

<호흡다듬기> 일단 모임을 잡습니다. 청소년인권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나만 알고 있어선 안돼요. 서로가 마주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일단 만나는 일부터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때 무슨 내용으로 만나면 좋을지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정해야겠지만, 일단은 그동안 학교에 어떤 점에 불만을 느꼈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모임을 주선하는 나는 친구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친밀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의지로만 모임을 무리하게 끌고 가다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수동화되기 쉽습니

다.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친구들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모두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TIP 1. 차근차근 자발성을 높여봐~

: 첫 만남부터 너무 높은 수위의 행동을 제안하진 맙시다. 내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속도를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다른 친구들의 자발성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행동 수위를 점차 높여가야 합니다.

☞ TIP 2. 결속력을 높여라~

: 만나는 친구들이 서로 잘 모르고 다양하면 친밀감을 높이는 데 공을 들여야 해요. 비공개 카페를 만드는 등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겠지요.

<좀더 짝세계~> 서로 얼굴도 익히고 마음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인권문제들을 토론해 나갑니다. 그저 불만을 털어놓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왜 이런 억압이 존재하는지, 어떤 대응논리를 펼 수 있을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일지 등에 대해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발전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토론은 인권을 되찾는 행동을 위한 토론인 만큼,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어려운 내용을 다루기보다 실제 도움이 될 만한 논점을 잡아 토론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 토론 주제의 예

학교는 두발규제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 걸까?

체벌은 필요악일까?

청소년은 정말 미성숙한 걸까?

어떤 행동을 해야 학교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청소년인권 옹호 근거를 어떻게 만들까?

☞ TIP 1. 주위를 둘러봐~

: 주변에 조언을 해줄 만한 인권활동가나 청소년인권에 관심있는 교사가 있는지 알아보고, 정기적인 토론모임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 TIP 2. 네트워크에 연락해~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 연락하면 각 모임의 상황에 맞는 자료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내에서 함께 행동하기

함께 행동할 만한 친구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학내에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3~4명 정도 모여도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5~6명 이상, 10명 이상의 친구들이 모인다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실험해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자신감입니다. ‘나와 친구들이 의지를 갖고 꾀꾀하게 행동한다면 학교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거야!!!’라는 자신감 말이지요. 물론 학교 안에서 활동하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를 바꾸지 못하면 사회도 바꿀 수 없겠지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 내 주위엔 친구들이 있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학교 밖 단체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자구요. 앞으로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겠다고 결심이 섰다면, 이제 행동에 옮길 차례입니다.

☞ TIP 1. 상황과 조건을 따져라~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인권침해 사례 수집, 서명받기, 학생회를 통해 건의하기, 벽보 붙이기, 전단지 뿌리기, 뱃지를 달거나 뿌리기, 학내 집회 열기, 락카시위 등등. 중요한 건 이러한 일들이 산발적으로 벌어지지 않고 명확한 요구와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돼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무턱대고 일을 벌인다면, 뭔가 행동은 했지만 이 행동을 통해 어떤 요구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나 행동 후 학교의 반응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어떤 유형의 활동을 펼칠지는 자기의 준비 정도, 학교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상황과 자신의 조건에 맞는 활동을 실행해 봅시다.

[1] 여론 복돋기

어떤 행동을 선택하든, 다른 친구들이 인권을 되찾는 행동을 지지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여론을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알아보고, 청소년인권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복돋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학내 인권침해 사례 수집하기 △의견을 알 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두발자유 등 특정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 △체벌금지, 청소년인권 보장 등 다양한 문구가 새겨진 버튼 달고 다니기 운동 △토론회 열기 △벽보 붙이기 △전단지 돌리기 등입니다. 학생회를 청소년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도록 독려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겠지요.

[2] 학내 집회 열기

학내집회는 우리의 요구를 학교에 강력하게 전달하고 학교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만큼 여러 친구들과 함께 공을 많이 들여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학교는 한두 학생의 ‘튀는’ 행동이 아니라, 여러 학생들이 ‘함께하는’ 행동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한 목소리로 우리의 요구를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큰 파급력을 낼 수 있으니까요.

☞ TIP 2. 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자~

- ✓ 학생들의 분노와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었나?
- ✓ 나와 친구들은 학내집회를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나?
- ✓ 우리 반, 우리 학년을 뛰어넘어 골고루 학생들의 참여를 조직할 사람이 여럿 확보되었나?
- ✓ 서로 연락처를 알고 준비를 함께 할 정도가 되었나?
- ✓ 학교에 무얼 요구할지, 어느 선까지 요구할지 목표를 명확하게 정했고 친구들의 생각이 모아졌나?

☞ TIP 3. 집회와 시위는 허락의 대상이 아니야~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는 청소년들도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입니다. 수업을 크게 방해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허락을 굳이 구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집회나 시위를 열 수 있어야 하지요.

만약 ‘학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집회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고 학교에서 억박지른다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허락의 대상이 아닌 모든 사람의 권리’라는 점을 또박또박 전달하면 좋습니다.

☞ TIP 4. 비밀 유지에 주의해~

문제는 학교가 요런 인권기준을 자주 무시한다는 거~. 학내 집회를 반길 학교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학교의 허락이나 양해를 구하고 나서 학내 집회를 열겠다고 생각하면 완전 헛다리를 짚는 셈이지요. 그래서 학내 집회를 준비할 때는 집회 계획이 미리 학교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해요. 안 그러면 해보기도 전에 학교에 의해 가로막힐 테니까요.

① 날짜와 장소 정하기

월요일 교문 앞, 2주일 뒤 점심시간 운동장, 야간학습 1교시 쉬는시간 운동장 등 언제, 어디에서 친구들과 모여 외칠지를 정해야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모이기 쉬운 때,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학교에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장소를 잘 선택해야 해요.

② 준비물 챙기기

우리의 요구를 선명하게 알릴 수 있는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해요. 어떤 문구를 담은 팻말을 들 것인지, 어떤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칠 것인지, 종이비행기를 날릴 것인지 아니면 촛불을 들 것인지 등등. 미리 미리 꼼꼼

하게 행동방침을 정하고 준비물을 챙겨두어야 해요. 강제이발 사진, 체벌 사진 등 우리 학교에서 청소년 인권을 침해하는 사진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 TIP 4. 기록과 정보가 중요해~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건, 교사의 폭력이나 말 등 관련 정보를 잘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관련 사진까지 확보해 두면 더없이 좋겠지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학교에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요구에 더 힘이 실릴 수 있으니까요.

③ 집회 열기

자,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네요. 친구들이 약속된 장소에 모였다면 다 같이 통일된 구호를 외치는 게 좋습니다. 두발자유 등 구호를 외칠 때는, 누가 주도하는지 티 나지 않게 다함께 외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들이 달려나왔을 때 몇몇 학생이 ‘주동자’로 찍혀 고생할 수 있으니까요.

☞ TIP 5. 요구 문서를 준비하자~

학교를 향한 요구를 미리 문서로 준비해 두고, 학내시위를 연 뒤 학교에 전달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이후 학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도 어떻게 대응할지가 명확해질 수 있으니까요.

☞ TIP 6. 조용히 말고 떠들썩하게~

학내 집회 소식을 미리 바깥 단체나 언론에 알려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

이 중요해요. 그래야 학교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위협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집회 소식을 접한 다른 청소년들도 용기를 낼 수 있을 테니까요.



학생회를 통해 교칙 바꾸기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학생회가 힘이 없거나 청소년인권 문제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거 때는 두발자유 등이 공약으로 나오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벌이지 않는 학생회도 많지요. 반면, 학생회 활동이 활성화된 학교도 여럿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학생회 임원이거나 우리 학교 학생회가 청소년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학생회를 통한 변화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만큼 대표성을 갖고 학교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기에 효과적입니다. 이 때 학생회는 설문조사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학생회 임원뿐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학생회는 임원들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학생회의 요구사항이 무시될 때에는 학생회 주도로 학내시위 등을 계획하거나 교육청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나 홀로 시위

여러 친구들의 참여를 얻어내기 어렵다면, ‘나 홀로 시위’를 여는 방법도 차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 홀로 시위는 교문 앞이나 교육청 앞 등 효과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장소를



택해 자신을 드러내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몰래 자신의 요구를 알리는 글을 학교 게시판이나 적당한 곳에 써놓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혼자하는 행동인 만큼 위험도 크지만, 학교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청 민원, 국가인권위 진정 활용하기

아무리 요구해도 학교가 꿈쩍도 않을 때, 학교보다 높은 상급기관에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일을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관할하고 있는 교육청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인터넷이나 전화, 직접 방문 등의 방식으로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함께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더라도 내 의지만 확고하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교육청 민원이나 국가인권위 진정을 넣을 때는 자기 실명을 밝히고 언제, 누구에 의해 인권침해가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TIP 7 : 이름을 밝히기 부담스럽다면...

학교에 알려질까봐 실명을 밝히기 부담스럽다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처럼 외부 단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당사자를 대신해 대리 진정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기자회견 열기

학교 안에서 모임을 만들기도 어렵고 학내집회를 열기에도 힘들다면,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수도 있어요. 이때는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증명할 수 있는 친구들의 증언이나 사진자료 등을 모아 ‘보도자료’를 잘 만드는 게 필수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말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얼굴과 실명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갖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이익이 두렵다면 가면을 쓰거나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 수도 있습니다.



기자들은 어떻게 모으냐구요? 어떤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 것인지, 언제 어디에서 열고자 하는지를 미리 정하고 ‘취재요청서’를 간략하게 작성해서 각 언론사에 보냅니다. 취재요청서만 보낸다고 기자들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연락을 돌리거나 인권단체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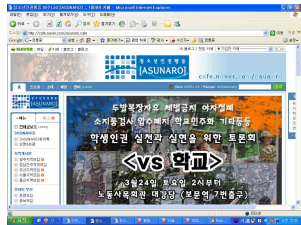
교문을 넘어, 학교 밖에서 활동하기

학교 안에서 활동하는 게 적힐까봐 너무 부담스러운 친구들, 또는 우리 학교를 바꾸는 것보다는 청소년인권을 광장에 나와 외치는 일이 지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임 만들거나 가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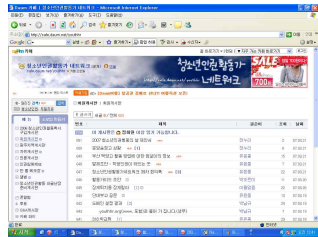
학교 밖 활동을 시작할 때에도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찾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해요. 혼자서 또는 주변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활동할 단체를 찾아보다거나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도 좋아요. 모임을 만들 때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게 좋겠지요. 오프라인 활동이 힘든 조건이라면, 온라인에서 카페나 모임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거예요.



단체와 연대하기

모임을 새로 만들든 이미 만들어진 모임에 가입하든, 혼자서는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활동도 하고 싶고 청소년인권에 대한 정보와 지식도 더

알고 싶다면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처럼 이미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 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련 단체에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취하거나 모임이 있는 날 찾아가면, 학교 밖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서로 힘을 보탬 수 있으니 활동의 효과도 더 커질 수 있겠지요.



혹시나 단체와 연대해서 활동하는 게 어렵거나 힘들진 않을까 걱정하신 마세요. 청소년인권을 고민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우리를 이어지게 하니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쉽게 찾아가갈 수 있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찾기가 힘들다면 전국적인 단위의 단체와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단체를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함께 활동하기

모임을 새로 만들거나 모임에 가입한 뒤에는 다양한 활동 유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따라가 볼까요?

[1] 거리 캠페인 열기

거리 캠페인은 주로 변화가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청소년들의 인권 요구를 알려내는 행사입니다.

접이식 탁자에 우리의 주장을 담은 전단지나 서명용지를 놓아두고 한두 사람이 부스를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피켓을 들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



단지를 나눠줍니다. 혹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나 청소년을 만나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타자는 주변 단체에서 빌릴 수도 있고, 빌리기 어렵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전단지나 버튼, 팸말 등이 있어야 왜 이런 캠페인을 하는지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캠페인을 하기 전에 우리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물품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팸말(피켓)이나 전단지에 들어가는 문구는 우리의 주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노래를 불러 관심을 돋우거나, 스티커 붙이기, 사례 신고하기, 물풍선 던지기 등 지나가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장이 더 잘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요.

☞ TIP 1. 목적을 분명히~

캠페인을 준비할 때는 캠페인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학생 인권법안 통과 지지 서명이라든가 체벌금지 촉구 서명, 청소년인권집회 홍보 등, 무엇을 목표로 캠페인을 하는지가 명확해야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을 수 있겠지요. 캠페인을 통해 모은 서명용지나 청소년들의 연락처는 잘 모아두었다가 다음 캠페인이나 행사를 준비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 TIP 2. 어른들이 시비를 걸어오면...

캠페인을 하다 보면, 주변 상인들이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화를 내거나 아직 청소년인권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른들이 시비를 걸어오는 일이 가끔 있어요. 이럴 때는 싸움을 벌이기보단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거나 곧 캠페인이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잘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눈치껏 달래거나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2] 항의 시위나 기자회견

요구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싶은 곳 앞에서 혼자서 또는 여럿이서 항의 시위나 항의 기자회견을 열 수도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가 항의하느냐는 주장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보통은 청소년인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각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 국회 앞 정도가 즐겨찾는 곳이지요.



팻말이나 현수막 등을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아요. 혼자서 또는 몇 명에서만 하는 거니까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 뒤엔 수많은 사람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서만 준비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잘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동시 다발로 항의시위를 연다면 훨씬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요?

☞ TIP 3. 조용히 말고 떠들썩하게~

무슨 일을 벌이든 관련 단체나 언론에 알려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한두 명이 항의한다고 정부가 꿈쩍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항의 시위나 기자회견 소식이 널리 알려질수록 우리의 요구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고, 그래야 여론의 힘으로 정부를 움직일 수 있겠지요?

[3] 집회와 행진

우리의 의견을 좀 더 확실하고 열정적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 하게 되는 행사 중 하나가 집회와 행진입니다. 거리에서 열

리는 집회나 행진은 학교를 직접 압박하진 못해도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서 간접적으로 학교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사회 다른 구성원들도 청소년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으니까, 학교 밖 거리 행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회든 행진이든 둘 다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고, 준비기간도 비교적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함께 준비할 사람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큰 집회와 행진을 준비한다면, 친구들끼리 하기보다는 많은 단체들과 연락을 해서 연대하길 바랍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 청소년인권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짜와 장소를 택해야 합니다. 날짜는 되도록이면 시험 기간은 피하고, 주말을 택하는 게 좋겠지요. 장소는 청소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나, 찾아오기 쉬운 곳이 좋겠구요.

어떤 내용으로 집회나 행진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회의하며 주제를 잡고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데, 청소년들의 발언과 퍼포먼스 등이 들어갑니다.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웹자보와 거리 캠페인을 통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구요.



TIP 4. 홍보도 중요한 참여~

내가 직접 집회나 행진을 준비하기에는 힘이 부족하거나 사정이 좋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집회나 행진을 직접 준비하지 않더라도 다른 단체에서 준비하는 집회나 행진을 주위 친구들에게 적극 알리고 함께 가자고 제안하는 일도 큰 보탬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먼 곳에서 집회나 행사가 열리더라도 소식을 널리 알려 주위 청소년들이 더 많은 관심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복돋는 일도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TIP 5. 집회나 행진 때는 미리 신고를~

집회나 행진을 준비할 때는 해당 장소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에 미리 신고를 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해당 장소에 다른 단체가 이미 집회나 행진을 잡아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청소년의 입장에서선 집회 신고를 내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찰이 무시하면서 신고를 안 받아줄 수도 있고, 경찰이 학교에 집회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나 행진을 준비할 때는 다른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답니다.



왔어요 왔어~ 징계퇴치용 징계킬라

학교 안팎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활동 중단을 요구하거나 중단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주겠다고 위협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학교는 이렇게 말하지요. 공연히 공부해야 할 학생들 들쭉시키고 다니면서 면학 분위기 어지럽히지 마라, 학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교칙에 금지되어 있다,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등등. 그러면서 벽보를 찢거나 버튼을 빼앗거나 체벌을 가하는 일에서부터 단체활동 중단 요구, 집회 참여 금지 명령 등을 내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직접 징계를 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인권활동에 나서기를 주저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쫄지 말고 침착하게!

담임, 학생부 교사, 교감이나 교장 등 누구라도 활동 중단을 요구하거나 징계 위협을 가할 때는 쫄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는 징계 위협을 가하면서 활동 중단을 요구할 어떤 권한도 없으니까요. 조목조목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학교가 가하는 위협의 구체적인 내용과 있었던 일을 잘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점점 커지고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빨리 이 일을 학교 밖 단체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도 모

를 때는 학교가 쉽게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위협을 가할 수 있지만, 이 일이 알려지면 학교도 부담을 갖게 될 테니까요.



징계의 정당성과 절차를 따져보자!

[1] 징계할 만한 일일까?

학교가 가하는 징계에는 훈계, 체벌, 벌점 등에서부터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강제전학, 퇴학 등 다양합니다.

학생의 어떤 행동에 대해 학교가 어떤 징계를 줄 수 있는지는 교칙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과연 교칙에 규정된 어떤 행동에 해당하는지, 학교는 나의 징계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학교의 징계 이유는 과연 타당한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다수 교칙에 정해진 징계 이유를 보면, 국제인권기준이나 헌법을 무시한, 말도 안되는 내용을 가득 담고 있어요. 징계 이유가 타당하지 않고 교칙이 그보다 높은 법인 국제인권기준이나 헌법, 법률 등과 반대되는 거라면,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구요.

TIP. 교칙을 구해두자

우리 학교의 교칙을 미리 입수해서 파악해두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미리 우리 학교 교칙을 입수하지 못했을 때에도 교칙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게 좋아요. 교칙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유로 징계를 주지 않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고, 교칙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교칙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2] 경위서나 반성문을 요구하면?

학교에서는 징계를 주기 전에 학생부실로 불러 이것저것 물어본 다음, 경위서나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성문만 쓰면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징계위원회(선도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쓰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 때, 자기 양심에 따라 반성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당당하게 거절하는 것이 옳겠지요. 쓰겠다고 결정하더라도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쓰는 게 중요하답니다. 만약 교사가 말로 위협하거나 몸에 손을 대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경위서나 반성문을 쓰게 할 경우에도, 쫓지 말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잘 기억하고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3] 변론할 기회가 주어졌나?

헌법이나 국제인권법에서는 유죄임이 밝혀질 때까지 누구나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고,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원칙은 학교 안 징계과정에서도 당연히 지켜져야 해요.

교내봉사부터 퇴학까지 무거운 징계의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선도위원회)를 소집하고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또는 내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징계는 불법이자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만약 징계위원회의 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해서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다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도움 줄 사람을 찾자~

만약 학교 안에 전교조 모임이나 청소년인권에 관심있는 교사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교사 중에 나를 지원해줄 사람이 생긴다면, 최악의 상황을 막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니까요. 그렇다고 전교조 교사만 무조건 믿고 다른 일을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되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도 모아 징계의 부당함을 계속 알려나가는 일이 중요해요.



만약 학교 안 사정이 좋지 않다면, 학교 밖에서 도움을 줄 만한 인권단체를 찾아 연락하세요. 인권단체와 함께 징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널리 알리면 학교도 함부로 징계를 주기 힘들게 된답니다.

끈기가 중요해!

그래도 징계가 내려온 경우에는 끈기 있게 버티면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겪은 일을 학교 안팎의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이때 친구들의 지지나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힘들어도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행동을 찾아보는 건 값지고 용기있는 일입니다.

학교가 내린 징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일이 더 커져 더 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비록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면 학교도 징계를 강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답니다.

만약 징계 명령에 따르기로 했더라도, 좀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장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은 포기해선 안 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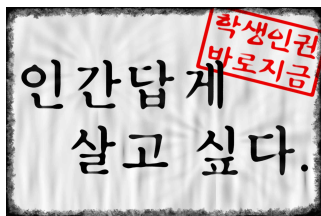


아하~ 요렇게 하는 거였군

..... 기본 문서 맛보기



주장을 담은 스티커



☞ 학교나 청소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요런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효과 짱이겠죠?



행사 홍보용 웹자보나 스티커

언제까지 억눌린 채 살 텐가?
모이자! 모이면 바꿀 수 있다!

5.14청소년인권행동의날

두발자유 바로, 지금!

5월 14일 오후 3시
광화문역 2번 출구 KT 앞

<http://nocut.or.kr>

청소년의 힘을 보여주자!
"우리가 잃을 것은 죽쇄뿐이요 얻을 것은 인권이다."
We can Change Schools

☞ 소문이 중요해! 행사 목적과 날짜를 알리고 참여를 호소하는 웹자보나 스티커를 인터넷과 거리에 뿌리면 효과적이겠지요?

친구들에게 나눠줄 전단지

2007년, 학생인권 상황은 대략 좋지 않다



광명신문, 1316virus 등 언론에 나가 2007년 '두발규제' 사진들

학교 나 댄드론 규제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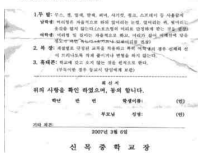
1. 학교 교사가 편지를 손에대며 통교할 수 없다.
2.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각 책상 스스로 행동을 추적한다.
3. 편지를 보려면 각 책상의 담장 교사가 필요하다.
4. 온에서 다시 되돌려 준다.

유대원은 보는 족족 압수. 두발규제-강제이발, 제발은 신문기사로까지 날 정도. 야지도, 소지품검사도, 학생회의 유명무실도, 동아리도 규제도, 그대르도.

이스타일은 귀뚜라미&무실언니?
좋은 only 교육?
자도 휴대전화압수도
동아리압수도 그대르?
아!



그런 반인권적인 규칙들을 놓고 '강제'로 '동의' 하라고 옥박지르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반교육적이고 기만적인지



그리나, 교육부도 교육청도 믿을 수 없다
'학교지음' 이란 말만 되돌아하면서
인권경계 면을 줄리던 민원남은 학생을
학교에 알려주지까지 한다
대통령도 믿을 수 없다
노무현이 3월13일 두발자유 해준다는 건
옛소문임이 밝혀졌다
경찰도 믿을 수 없다
신석중학교에서는, 강제이발을 신고한 한 학생을
경찰이 생필지도무로 넘겨버리기도 했다

학생인권, 어떻게 해야 하나?

체벌페지
야차질페
유-용의복장자유
휴대폰압수페지
검사,휴대폰압수페지
학생회, 동아리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
기타 모든 인권

성인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학교를 바꿀 것인가?

학생인권 실천과 실현을 위한 토론회

< VS 학교 >
붙어보자 School!!

3월 24일 오후 2시부터
노동사목회관 대강당 (보문역7번출구)

- 2007 학생인권 현황 -
- 학생인권 활동 사례 소개 -
- 2007 학생인권운동 방향 제시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http://youthhr.org>

☞ 간단한 홍보보다 좀더 많은 내용의 주장을 담고 싶을 때는 전단지
를 만들어 배포하면 좋아요. 앞뒤 한 장에 가득, 주장은 간단하게,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는 풍부하게 담아보아요~



학교, 정부를 향한 성명서나 의견서

☞ 성명서나 의견서는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할 대상(학교나 교육청, 교육부 등)에게 보내는 조금 긴 글입니다. △문제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나 정책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면서 조목 조목 반박 논리를 펴고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떤 향후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짚어주면 좋겠지요? 또 하나! 마음이 맞는 사람이나 단체들에게 함께 해달라고 부탁해서 여러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으로 의견을 전달하면, 우리의 요구에 더 힘이 실릴 거예요.

[예]

수신 : 중앙고등학교 교장

발신 : 인권사회단체들

제목 : 학생인권 보장 학내집회 관련 징계시도에 대한 의견서

날짜 : 2007.3.14(수)

문의 : 전누리, 배경내 (02-365-5359)

중앙고에 드리는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중앙고 학생들의 학내 집회에 지지를 표하며
관련 학생에 대한 징계는 없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학교인권문화 조성파 청소년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 12일 귀교에서 있었던 두발자유 등을 주장한 학내 집회와 관련하여 관련 학생에 대한 징계

가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2. 우리는 이번 두발자유 집회가 주로 귀교의 두발규제 등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데 주목합니다. 귀교에서는 두발단속에 걸린 학생들에 대해 체벌을 가하고 머리를 깎도록 압력을 넣는 등 학생인권 침해를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귀교는 귀교의 두발규제가 학생, 교사, 학부모 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것이며 그렇게 정해진 규정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는 학생들이 외친 두발자유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는 기본적 인권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귀교는 두발규제가 불가피한 이유를 입증해야 하며, 현재 규정이 필요최소한의 것인지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은 채, 이미 만들어진 규정의 정당성만을 되뇌며 학생들에게 규정에 따를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기본권의 주체인 학생들이 현 두발규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개정을 요구한다면, 그 의견은 긴급하고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귀교는 이번 학내 집회와 관련해서 학생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집회를 하지 않겠다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반인권적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교는 집회와 같은 학생들의 집합적인 행동이 학교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며, 규정 개정을 원한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평화적 집회는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방법이 아니라 지극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표현의 한 형식이며, 그러하기에 국제인권조약들과 우리 헌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협소한 의미의 ‘정해진 절차’만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야말로 표현의 형식을 일방적으로 강제하

는 것으로서,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지난 2006년 4월 19일, 교육부 역시 각 시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학내집회를 원천봉쇄하기보다는 시위 발생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5. 우리는 지난 12일 집회와 관련하여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있어서는 안 되며, 징계 유보의 대가로 각서의 제출도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집회는 장소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귀교에서 징계 사유로 언급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유인물 배포”도 언론·표현의 자유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교의 학생들은 국제인권조약과 헌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했을 뿐, 징계를 받아야 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6.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귀교가 두발규제를 비롯한 반인권적 교칙 등 인권침해를 반성하고 두발규정 개정 등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7년 3월 14일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전교조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청소년
다함께/청소년인권모임‘나르샤’/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언론사에 보낼 취재요청서

☞ 어떤 행사나 행동을 ‘이슈화’시키려면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매체에서 보도를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해요. 먼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간략하면 서도 짚직한 취재요청서를 언론사에 보내고, 좀더 자세한 취지와 행사 설명, 첨부자료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행사 당일 언론사에 나눠주면 더 정확한 보도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청소년인권 전국행진단

수신 : 각 언론사 교육·사회부·NGO 담당자

발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제목 : 두발자유와 학생인권법 통과를 위한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취재요청

날짜 : 2006.8.12(토)

문의 : 배경내(017-214-3550), 전누리(016-297-9803)

두발자유화 학생인권법안 통과 청소년인권전국행진 출발 기자회견

□ 때: 2006년 8월 14일(월) 오전 11시

□ 곳: 교육부 앞(정부종합청사 후문)

1. 수고하십니다.

2.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전교조, 각 지역 청소년·교육·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두발자유와 학생인권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 직접행동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파란만장 - 청소년인권 전국행진’을 시작합니다.

3. 행진단은 서울을 출발하여 대구까지 전국 6개 도시를 찾아가게 됩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지역에서는 각 지역단체와 청소년들과 함께 집회와 캠페인, 청소년인권 공동행동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첫 출발일인 14일, 기자회견을 갖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첨부: 전국행진 주요 일정과 내용 (4쪽)

◆ 기 자 회 견 순 서 ◆

1. 전국행진 취지와 주요 일정
2. 연대사 - 전교조, 교육공동체 나다
3. 행진 참가 청소년 발언
4. 함께 부르는 노래
5. 행진선언문 낭독
6. 퍼포먼스 : 파란만장 학생인권



오홋~ 요런 게 있었네

..... 청소년인권 관련 주요 기준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

*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문서로, 국경을 넘어서 인권에 관한 가장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아래는 세계인권선언 원문을 인권운동사랑방이 쉬운 말로 고쳐 쓴 것입니다.

■ 1조: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 2조: 차별은 안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 3조: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 4조: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 5조: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 6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 7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

■ 8조: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 9조: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 10조: 재판은 공정하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편들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11조: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 12조: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13조: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디든 오고 갈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떠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14조: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 15조: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가진다. 누구도 함부로 나의 국적을 빼앗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 16조: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 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결혼할 사람 둘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결혼할 수 있다. 결혼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설령 이혼할 때에도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가정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

■ 17조: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 18조: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

■ 19조: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20조: 모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소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

■ 21조: 선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선거로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

■ 22조: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 23조: 마음놓고 일하기 위하여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24조: 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은 합리적으로 제한 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 25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26조: 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기초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 27조: 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문학·예술의 산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 28조: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 29조: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 30조: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세계 모든 나라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선언한 국제인권규범이에요. 한국정부가 1991년에 이 협약에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래는 인권운동사랑방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조항만을 뽑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 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협약에 적혀 있는 권리의 주인이다.

■ 2조

우리가 누구이든, 부모님이 누구이든, 피부색이 무엇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느 나라 말을 쓰든, 어떤 종교를 믿든, 장애가 있든 없든, 부자이든 가난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협약에 적혀 있는 권리를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한다.

■ 3조

나라가 우리에게 관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 6조

모든 사람은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명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태어난 날, 부모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적을 갖고 나라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를 낳아 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 받을 권리가 있다.

■ 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란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피주지 않을 때이다. 부모님이 따로 산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함께 살 권리가 있다.

■ 11조

우리를 다른 나라로 함부로 팔아넘기거나 내보내서는 안 되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12조

어른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 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잘 생각

해야 한다.

■ 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어야 한다.

■ 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 된다.

■ 16조

아무도 우리의 사생활이나 편지, 전화 등을 함부로 엿보거나 억지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 17조

우리는 신문, 방송, 잡지, 책 등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나라 안팎에서 얻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신문, 방송, 잡지 등이 우리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도서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 18조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부모님이 우리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특히 일하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매 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는 없다.

■ 20조

부모님이 없거나,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때,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쪽으로 해야 한다.

■ 22조

우리가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힘든 일 때문에 다른 나라에 피난을 갈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24조

우리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무엇보다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7조

우리는 알맞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

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정부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 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하고, 더 높은 교육까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학교는 우리의 권리를 해치는 규칙을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 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 30조

소수집단의 어린이와 청소년도 자신들의 문화를 누리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 31조

우리에게 쉼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32조

우리는 위협하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교육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 33조

우리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 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짓을 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 35조

우리가 유괴당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일 때를 빼고는 우리를 함부로 가둘 수 없다. 만약 간혀 있더라도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세까지는 절대로 군대에 들어가게 하거나 전쟁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39조

학대당하거나, 버려지거나, 전쟁 등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살핌과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 42조

우리는 이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우리의 권리를 알아야 한다. 모든 어른과 어린이·청소년에게 이 협약을 널리 알리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결정문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인권보장 책임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국가인권 보장기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5월 두발자유를 추구하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다시 불타오르자, 그해 6월 두발 관련 제도 개선을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교육부나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강제이발을 금지하고 있고 학교생활규정을 만들 때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만 간략히 소개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1.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에서의 두발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1.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1.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

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1.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 결정문 전문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홈페이지 www.youthhr.org 자료실 참고하세요.)



학내집회 관련 교육부 지침

[경향신문] 中·高 학내시위 ‘원천금지’ 안 한다 (2006.05.06)

중·고등학생들의 학내 집회 및 시위가 대폭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시위를 무조건 막지 않고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또 올 상반기 중으로 국가인권위 등과 함께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 관계자는 5일 “학교에서 시위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막기보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학생지도를 하기로 지난달 19일 가진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관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장학관 회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서 두발 자율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진 것을 계기로 열렸으며, 참석자들은 학생 시위가 발생했을 때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로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당시 결정된 내용을 회의자료 형식으로 정리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으며 각 교육청은 자체 판단에 따라 지역 교육청 및 관내 학교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교육 당국이나 학교는 중·고생들의 시위에 대해 내용의 건전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집단 행동’으로 규정, 사실상 원천 금지해 왔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고교에서는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허가없이 서클을 조직 운영하여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동맹휴학을 선동, 주도하거나 동참한 학생 ▲정치 관여 행위,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등에 대해 징계하도록 교칙에 명문화돼 있다.

집단행동에 대한 처벌은 폭력이나 약물 등 일반적인 일탈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에서 시위를 주도하면 거의 퇴학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강의석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2004년 고교 3년생이던 강씨는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

교육 당국이 학생 시위에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관련 교칙 개정 작업 등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린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돼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학교가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을 상반기 안으로 학생 시위 금지 같은 학생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나 청소년위원회와 함께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창민기자 riski@kyunghyang.com〉



징계시 학생변론권 관련 서울시교육청 방침

[바이러스] '학생변론권 보장' 오병헌이 학교정책 바꿨다

<기획> 서울시교육청, "학생 징계 시 재심청구권·학생변론권 보장"

(2006.09.30)

오병헌군이 주장했던 '학생 징계 시 재심청구권·학생변론권 보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조영상 장학사는 29일 "앞으로 서울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재심청구권을 보장하도록 지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재심청구권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특히 D고에서 1인시위를 했던 오병헌군의 경우 재심청구권·학생변론권이 없는 학교 징계 절차를 문제 삼으며 징계를 거부해, 우리사회에서 학생인권에 대해 돌아볼 계기를 만든 바 있다.

시교육청에선 재심청구권을 규정에 정하도록 지도하는 것과 함께 학생 징계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시교육청 조영상 장학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상고를 보장하듯이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재심청구권이나 학생변론권을 학교규정으로 명문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에선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생활지도를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초중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규정 관련 연수를 진행한다. 정혜규 기자 66950@hanmail.net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요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청소년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꿈꾸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무슨 일을 하나

2006년 3월부터 청소년인권을 억압하는 학교 바꾸기 운동, 학생인권법안 통과 운동, 청소년인권 역사 연구, 청소년 인권교육, 청소년인권활동지원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청소년인권 행동의 날 집회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청소년인권캠프 △학내 시위 지원 △학생의 날 맞이 학생인권 탕탱볼 굴리기 행사 △청소년인권 정책 감시 등 청소년인권 억압에 저항하는 현장에 늘 가까이 있으려고 합니다.

누가 함께하나

현재까지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모임 나르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5개 단체와 청소년인권을 지지하는 개인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청소년인권을 지지하는 모두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단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함께하고 싶다면

전화 : 02)365-5359, 016-297-9803

이메일 : youthhr@chol.com

웹사이트 : cafe.daum.net/youthhr(카페), www.youthhr.org(홈페이지)